

포항시 환경교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년 6월 8일 / 포항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6년 6월 8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330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
■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(2026. 6. 18.) 상정 . 질의답변 . 토론 .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박선영 환경정책과장)

가. 개정사유

- 포항환경학교의 이전과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지정(2025.4, 기후에너지환경부) 등으로 환경교육시설의 기능과 범위가 확대되어 통합 운영의 필요성이 증대됨
-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기존 「포항환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「포항시 환경교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」로 전부 개정함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기존 조항 일괄 삭제 (제2조~제13조)
- 조문의 구성을 정비하여 제3조를 제2조로, 제11조를 제13조로 정리 (안 제2조, 제13조)
- 적용 대상 시설을 환경교육시설로 확대하고 시설 이전에 따른 위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통합 운영 근거 마련 (안 제3조)
- 운영체계 및 운영시간 정비 (안 제5조~제6조)
- 시설 이용·행위 제한 및 변상 책임 등 이용자 관리 구체화 (안 제7조~제9조)
- 수탁자 의무 및 지도·감독 규정 신설 (안 제10조 ~ 제12조)
- 전시물 관리 및 보험 가입 등 시설관리 기준 명확화 (안 제13조)

다. 관련법령

-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김경희)

- 본 조례안은 포항환경학교의 이전 및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지정에 따라 환경교육시설의 통합 운영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환경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·운영 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,

○ 종합검토 결과

-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 및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.
- 따라서, 포항시는 시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,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·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할 것임.
- 본 개정안은 환경학교와 유아기후환경교육관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, 운영체계 정비 및 시설 이용 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, 검토 결과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략

5. 토론의 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